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36
------------	------

2025년 4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이종배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종배 의원)

1. 제안이유

- 2024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을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임에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교육감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개탄하며 불법적인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촉구함.

2. 주요내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음.
-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과거 전교조가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2020년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그럼에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며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고 있음.
- 이에 교육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불법적인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결의안은 2025년 3월 31일 이종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636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결의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를 엄중하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결의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결의안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의견표명은 지방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에¹⁾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지는 행위입니다.²⁾
- 물론 지방의회의 결의안은 관계기관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지방의원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으로 표현한 의사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아닌 사회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룰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동 결의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行了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을 두고 전교조가 성명을 발표한 것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임을 밝히고, 교육감에게 해당 성명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직원을 징계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 결의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과거 전교조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적 가치 보호에 결의안의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결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1)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2025), 139p ‘결의안 채택 등 의견 표명의 효과’

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³⁾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원칙⁴⁾입니다.
 - 이는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특정이념이나 정당에 치우친 교육을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학교가 특정 이념을 주입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⁵⁾입니다.
 - 이에 따라 교원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각종 법령에서 명시⁶⁾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대법원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⁷⁾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라고 판시⁸⁾한 바 있습니다.

3) 「대한민국헌법」제31조 ①~③ (생략)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⑥(생략)

4)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5) 「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8)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2012상,912]

- 그러면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배경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일반시민보다 엄격해야 하나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의 영역이라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동 결의안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지역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촉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¹⁰⁾에 따라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았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이처럼 교원에 대한 임명권(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시¹¹⁾하고 있습니다.

9)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1999. 9. 30.>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1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결의안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표명은 ‘권고’ 수준이어야 하고, 결의안이 접수기관의 고유권한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표명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¹²⁾
- 따라서 동 결의안은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한편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표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 차원의 조치 요청이 전혀 없고, 향후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¹³⁾ 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육부 차원의 조치가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통보될 경우, 후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동 안건이 제시하는 교원의 시국선언의 불법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 유죄판결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시국선언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받은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소라 의원)
- 전국 1만 5천여 명의 교사들이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법령은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조항임. 다만, 수업 활동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적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일

12)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2025), 139p ‘결의안 채택 등 의견 표명의 효과’

13) 교육전문위원실-948(행정관리담당관-4469) 서울시교육청 의원발의 결의안 의견서

부 교사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교사들에게 연수하고 있음.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법령 어디에서도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 장소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일부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효원 의원)
-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있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거나 법률개정 요구 등 관련 검토를 한 바는 없었음. 수업 외 일상생활 중 정치적 행위에 대한 금지도 과도한 제약이라고 밝히는 일부 교원들이 있다는 의견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 전반에 대해 안내하였음.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V. 토론요지

- 정치적 중립성은 교실 내·외를 불문하고 중요한 가치이며, 학생들이 이념적 분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함.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논리적 사고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념이나 정치적 내용에 매몰되지 않게 특별한 신경을 써주도록 요청함. (이희원 의원)
- 가치관이 덜 형성된 학생들에게 정치색을 드러내는 교사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주의를 당부함. (김경훈 의원)
- 최근 인천의 현직 교사가 시국선언 한 부분에 대해 무혐의 조치가 있었던 사례를 볼 때 교육부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동 결의안 내용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최재란 의원)
- 그동안 단순한 시국선언과 같은 교사의 행위를 징계 처벌하는 사례

는 없었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또한 특별한 징계 요구를 한 바 없었기 때문에 동 결의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감에게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은 시대정신이 퇴보된 것임. 또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은 반대의견을 내고 찬성한 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전병주 의원)

○ 시국선언은 불법 내란이라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침묵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교사들의 용기에서 발생한 일로써, 그 용기를 칭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다만 법적 판단을 통해 교육부 의견을 충분히 기다린 이후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결정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우형찬 의원)

○ 정치적 중립성을 법에서 규정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원이 특정 정당 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담긴 시국선언문에 서명하고 단체·집단행동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어떠한 결정이든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정지웅 의원)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11명, 찬성 7명, 반대 4명).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 헌법과 법률에서 교육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 과거 전교조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하여,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따라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이다.
- 전교조의 불법적인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하여 교직원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서울시 교육감은 불법을 저지른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
- 하지만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대한 불법 및 징계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전교조를 감쌌다.
-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의 전교조 불법에 눈감는 행위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정근식 교육감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서울시의회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불법적인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4. 0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